

김 낙 등  
(주)동양건축사사무소  
by Kim Nak-dong, KIRA

## 현상설계 유감

- 현상설계 왜곡실태로 비춰진 건축사의 현실 그리고 지독한 바람

Regrets on Design Competitions

feature

필자는 최근 G시에서 공모한 '중앙도서관건립 설계경기'에서 상식이하의 부당한 경우를 맞으며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기에 회원간 의견을 공유하여 너무나 미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며, 회원간의 신뢰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글을 정리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 현상설계가 갖는 원천적 의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설교통부)',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건축가협회)' 등에서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현상설계는 새로운 신인의 데뷔, 상호 작품세계의 교류, 우리 건축문화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며 건

축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많은 건축인들이 정열과 시간 그리고 경제적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건축계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건축인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설계경기가 진행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할 건축계의 목소리도 중요하지 만 우리 건축사 스스로 공정한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5항' 근거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1998-43호)'이 제정 되어져 있으며, 제1조(목적)에서 "이 지침으로... 건축 설계경기에 대한 시행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경기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축 문화의 발전과 공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문화하여 설계경기의 공정한 경기질서 확립을 명백히 하고 있다.

### 현상설계의 왜곡과 악용

#### (G시 '중앙도서관건립 설계경기' 사례를 중심으로)

####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당선작의 문제점

##### • 주요 결격사유

- 연면적의 700여 평(23%) 이상 초과(연면적 3,200평 이내 설계 조건 위반)
- 지하층 2/3정도 노출에 따른 지상5층 규모(지상4층 이내 설계 조건 위반)
- 부지 내 기존 콘크리트수로(2,0m×1.5m×240m)의 철거 및 신설(부지 내 수로의 보전 조건 위반)

당선작의 실제면적·실제층수와 상이하게 기록되어진 설계 설명서의 의도적 오류를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시가 어떠한 합리적 검증절차도 없이 부당한 당선작의 자료만을 판단근거로 제시하며 위반사실이 없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펴는 불가해한 행정처리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로부터 연면적 647,33평 초과(기동중심 산정), 지하층 불인정(지하층 지상4층이 아니라 지상5층) 등의 공식적 확인사항을 제시하자 G시와 Y건축사(당선사)는 현상설계는 디자인 설계일 뿐으로 면적과 층수 차이는 실시설계에서 조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라는 말 바꾸기로 상식이하의 꾀변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당선작을 건축법과 당초의 설계조건에 맞

추려면 당선작 계획안의 대폭적인 수정 또는 예산(예정공사비:17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비의 상당한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이는 당선작은 없고 당선사만 존재하는 웃지 못 할 초유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현상설계 진행과정의 불공정성

##### • 발주처(G시)의 무지 또는 음모

- 심사과정에서 기본적인 건축법(층수, 면적 등) 및 공모규정(수로 보전 등) 위배 사항의 확인과정 간과 : 심사 진행 전 발주처는 기본적인 건축법과 주요한 공모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 하였고, 심사위원회 또한 이를 소홀히 함으로 부당한작품이 당선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 당선작 발표 후 당선작의 주요 결격사유 지적에 G시의 비논리적, 비상식적 대처 : 필자가 지적한 당선작의 주요한 결격사유 관련하여 G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대상이 되어진 당선작의 자료만을 근거로 당선작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략)—당선작의 설계 설명서 개요 내 시설면적 표기는 지침서상 면적 기준 이내이고—(중략)—"라는 비 객관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G시 스스로의 무지함 내지는 당선작을 낸 건축사와 부정한 연결고리를 의심하게 하는 징표라 하겠다.

- 수상작(당선작, 장려작) 포상의 반이성적 진행 : 이의제기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사와 서둘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비정상적인 당선작 지키기 행태로 시종일관하는 G시는 또 다른 이면의 의혹마저도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장려작으로 선정된 건축사에게는 포상금만을 온라인 입금하였고, 정작 우수작으로 선정된 본 건축사에게는 어떠한 공식적 통보나 시상(상금)도 되어지지 아니함은 발주처의 치졸함을 여실히 드러냄이다.

##### • 건축사의 사욕과 도덕성의 상실

- 건축사 현장 중 '건축사는 기술개발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한다', '건축사는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회원 상호간에 협동하여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라는 항목 등이 있다. 건축사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

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건축사들을 비롯이라도 하듯 Y건축사는 지나친 몰욕으로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포기하고, 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을 의심하게 하는 몰상식한 주장을 펼침으로 회원과 협회 그리고 선량한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 계란으로 바위치기

### 對 발주처(발주처의 힘)

현재 G시는 자신의 오류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G시 스스로의 그릇됨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세비와 막강한 조직력으로 자기방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G시 2005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200여 억이 투자되는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견사항이 쟁점화 된 어느 순간부터 표면상으로는 모든 창구를 도서관장(과장급)에게 넘김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겁함을 연출하며, 매순간 유치하고 앞뒤가 맞지 아니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당한 행정을 펼치는 G시의 재력(혈세)과 조직의 힘은 정의라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이 대적하기엔 모든 면이 만만치 아니하고 개인의 출혈은 너무나 크고 아픔에, 미약한 스스로와 건축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 對 건축사(건축사 아닌 건축사)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공인이다. 건축사는 전문가적 소양과 도덕적 가치관을 어떠한 회유(몰욕)와 압력에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보다 엄격하여 회원간은 물론 국민에

게서도 신뢰받는 모범 집단이 되어짐이 우리(건축사 개인과 협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현혹되어 건축법은 물론 회원간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행태를 펼치는 Y건축사를 보며 그와 같은 건축사란 직업을 가졌음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협회의 공식적·객관적 의견을 무시함은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회원간은 물론 사회의 보편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건축사마저 동료회원으로 포용하여야 하는지 자문하여 본다.

### 對 사법부(비전문가(판사, 변호사 등의 법해석)

발주처인 G시와 대화가 무의미함으로 법원에서 진실과 정의의 의미를 구하기로 하고, 유사 사례분석 결과 현상설계상 분쟁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발주처(시·군·구청)와 개인(건축사)간의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사인간의 계약관계(분쟁)로 분류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되어질 수 없음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승소확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함이 파악되어 실망을 금치 못하였지만 수치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부당사실(실격사유) 등을 확인하였기에 행정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분명 발주처가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과 당선직의 부당사실의 확신으로 정의로운 법해석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으나 결과는 행정(효력집행정지), 민사(가처분)소송 모두 시시비비를 가림도 없이 기각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이는 결국 현상설계에서 부당한 작품이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직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발주처, 민법, 행정법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극단적인 결과를 보여 줌으로 보편타당한 질서와 사회적 정의 수호는 부질없는 공염불에 그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한 재판 결과에 대해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당선작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우수작

여 향소하기로 하고, 남아있는 본안소송에 더욱 충실하기로 함은 스스로에의 사랑을, 옳음을 행함에의 신념을 강하게 지키고자 함이다.

### 건축사로서 지독한 바람

#### 진정한 협회

협회는 회원에 의하여 존립되고, 회원을 위하여 존립 되어진다. 회원간의 신뢰와 질서를 해하고 협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이 그러한 행위자가 우리회원일 경우는 단호하게 대처함에 주저함이 있어선 아니 될 것이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리 건축사들은 너무나 침담한 현실과 사회적 약자로 많은 부대감을 당하였고, 회원들 스스로도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경쟁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건축사로서 가졌던 희망의 청사진들은 대부분 접힘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사면초가의 어려운 상황들에서 금년 초 절대다수의 성원 하에 새롭게 출범한 우리 협회에 진실구현·정의실천 이라는 절박한 희망을 가져봄은 지나친 기대일까?

#### 공인으로서의 건축사

건축사는 많은데 진정한 건축사는 얼마나 되는가?  
40대 중반의 중견 건축인으로서 16년 전 느꼈던 건축사로서의 위상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심적·물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용기 없는 전문인으로 전락되었음을 절감하게 된다. 더욱이 건축사로서의 상대적 유리한 입지를 점한 일부 건축사들의 비겁한 일탈과 공개적 불법에는 할말을 잃고 전문가로서의 수치심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이 들 정도이다. 우리 건축사들은 사회적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도덕성과 정의를 전문지식 구현보다 우선함이 기본이 아닐까 한다.

#### 자리 잡기

비록에 부정한 G시·부도덕한 Y건축사를 상대로 한 진실 구하기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몸짓이라 하여도 40여년 지켜온 진실과 정의에의 믿음 그리고 스스로에게의 사랑으로 옳음을 행함에 사력을 다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진실이 받아드려짐은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서 우리 건축사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고, 잘못된 관행과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법질서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단초가 되어질 것 이리라 확신하여 본다.

건축사와 협회의 바른 자리매김을 위하여 마음을 다잡으며 정의로운 건축사들의 행동하는 양심에 희망을 담아보기로 한다. ▣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정려작



G시 중앙도서관 설계경기 / 정려작